

의안번호	2209466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5.4.23.
추계번호	25D19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예보 등의 통지를 요청할 때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재난예보 등의 통지 요청 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청 (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589	—	—	—	—	589	118

- 주: 1. 재난예보 등의 통지 요청 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청(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재난예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mergency Ready App을 개발하여 이미 제공 중이고, 재난예보 등의 통지 요청 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발송되는 재난문자는 비용¹⁾이 소요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제작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3.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별 행동요령에 관한 수어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²⁾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재난문자는 민간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지국을 기반으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한 사람들에게 “방송” 형태로 빠르게 전달하는 CBS방식으로 발송하는데,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은 기지국에서 방송을 통해 다수의 단말기에 재난 예보·경보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SMS(Short Message Service)는 일대일 통신을 기반으로 각각의 단말기에 내용을 전송하게 되어 트래픽 용량이 초과되므로 전달이 지연되거나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 2) 시각장애인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설정을 통해 재난문자 수신 시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의2제7항(재난예보 등의 통지 요청 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8조의2제7항(재난예보 등의 통지 요청 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청)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결국 장애인 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작성 또는 제작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별 행동요령 등에 관한 수어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전디딤돌(재난안전 포털앱)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인에게는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제공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별 행동요령 등에 관한 수어영상의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 － 시각장애인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설정을 통해 재난문자 수신 시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안전디딤돌 등에 업로드하여 제공하거나 시·도별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기 위한 재난별 행동요령, 지역별 특징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요령에 관한 수어영상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에 관한 예보 등을 통지 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17개 시·도지사가 재난별 행동요령 등에 관하여 수어영상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 조달청의 나라장터 검색결과,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표시정보 아바타 수어 영상 제작용역’을 추진 중이고 2025년 4월 현재 용역금액은 3,000만원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1.9%	2.0%	2.0%	2.0%	2.0%

- 본 추계에서는 총 19개 기관에서 재난별 행동요령 등에 관한 수어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수어영상은 제작 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 기준 용역금액은 1건당 3,100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예보 등의 통지를 요청할 때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 2026년에 행정안전부, 기상청, 17개 시·도 등 총 19개 기관에서 수어영상 제작 용역을 실시하면 5억 8,900만원(=19건×3,100만원)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별 행동요령 등에 관한 수어영상 제작	589	-	-	-	-	5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